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 39호 | 발행인 : 우남희 | 발행일 : 2015년 8월 10일 |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08 August

증가하는 중국동포 육아도우미, 제도화 뒷받침 되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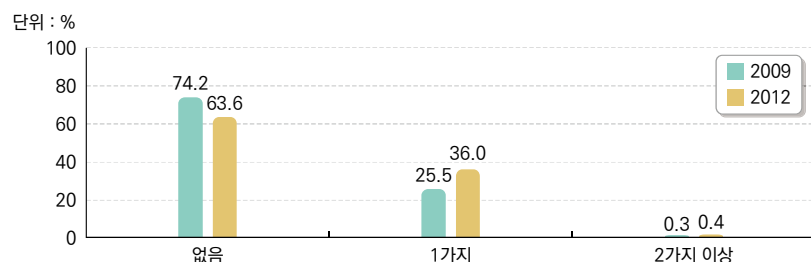
I. 중국동포 육아도우미 이용 배경 - 영유아가구의 다양한 육아지원 수요

개별 가정은 자녀 돌봄 서비스의 양(시간 및 시간대)과 질, 내용의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함.

- 2012년 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영유아가구에서 자녀양육을 위해 가정내 양육지원 인력(혈연, 비혈연 육아전문인력 포함)을 이용한 비율이 36.5%로 나타남.

유치원·어린이집과 같은 기관만 다니는 경우가 50.5%로 약 절반 수준이며, 기관+개인 서비스 이용이 26.9%, 개인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가 9.6%, 미이용 13.0%로 응답됨(서문희 외, 2012, 130p).

2009년 대비 2012년 가정내 양육지원 개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율이 증가함. 특히, 기관+개인 서비스의 병행 이용이 증가함(16.3%→26.9%).



자료: 2009-2012 전국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서(서문희 외, 2012, 129p)

[그림 1] 영유아가구가 이용하는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수

- 중고령 중국동포 여성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현행 양육지원 서비스의 내용과 질, 양의 부족을 중국동포 여성(일명 조선족 이모)이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음.

2015년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인 총 174만명(주민등록인구 대비 3.4%)으로, 그 중 중국동포 여성이 약 20%(34만명 규모)의 큰 비중을 차지함.

육아도우미는 사적 영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인 만큼,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규모로 인력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 파악이 부족함. 구인/구직 과정과 비용, 양육 실제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드러내는 실태 자료가 없음.

* 본고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중국종합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육아정책연구소 「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봄 현황 및 양육가치관 연구」(최윤경·장혜진·민정원·배윤진·송신영, 2014) 보고서에 기초함(연구기간: 2014년 5~10월).

II. 중국동포 육아도우미 구인/구직 및 이용 현황

육아지원인력에 의한 자녀 돌봄은 여전히 개인의 인맥과 정보에 의존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음.

- 서울/경기 지역 중국동포 육아도우미 2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자녀교육에 돈을 보태거나 재산증식을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하였으며, 주로 친인척 초청 또는 브로커를 통해 입국함. 후자의 경우 상당한 금액의 중개비를 지불함.

한국에서 아이 돌보는 일을 하기 전에 식당일을 한 경험이 약 6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사도우미 43%, 청소일 17%, 간병인 11%의 순으로 육아도우미로서 전문성 신장과 교육의 기회가 없는 인력이 대부분임.

- 최근 3년 이내 중국동포 육아도우미를 고용한 경험이 있는 259명의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¹⁾, 지금까지 고용한 도우미 인력은 평균 2.6명, 그 중 중국동포 도우미는 평균 1.6명임.

육아도우미 1인당 평균 고용기간은 약 15개월로, 12개월 미만의 단기간 이용률(52.3%)이 높은 편임. 영유아가구의 안정적인 도우미 고용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한국 부모가 중국동포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는 경로는 지인의 소개나 소개업소의 추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채용으로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짐.

소개업소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신뢰도와 충분도에서 상당히 미흡한 수준임.

〈표 1〉 중국동포 육아도우미 구인 경로

응답 항목	%	응답 항목	%
지인의 소개	52.1	육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소개	14.3
소개업소	35.5	공공기관 정보 활용	4.2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직접 채용	24.7	종교단체 소개	2.7

주: 중복응답, N=259

자료: 최윤경 외(2014). 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현황 및 양육가치관 연구, 184p

- 중국동포 육아도우미 고용 형태는 입주 39.0%, 출퇴근제 47.1%, 시간제 13.9%로 다양함. 급여는 150~200만원으로 돌보는 아이의 수와 연령, 근무시간,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짐.

〈표 2〉 중국동포 육아도우미 급여

단위: 만원, (명)

근로 형태	(사례수)	첫 달 월급	소개비	현재/최근 월급
전체	(259)	130.5	17.5	138.6
입주	(101)	155.0	19.2	162.2
출퇴근제	(122)	121.0	16.7	130.8
시간제	(36)	92.9	10.0	97.1

자료: 최윤경 외(2014). 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현황 및 양육가치관 연구, 249p

전체적으로 첫 달 월급에 비해 마지막 달 월급이 오른 상승을 보임. 입주인 경우 급여가 월평균 162만원(현재/가장 최근 기준)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출퇴근제 약 131만원, 시간제 약 97만원으로 나타남. 우리나라 아이돌보미 평균 임금 수준에 비해 높음. 소개료는 평균 17.5만원으로 첫 달 월급의 13.4%에 해당함.

1) 중국동포 육아도우미 고용 경험이 있는 영유아가구에 대한 유의표집으로, 전국 대표성에 제한이 있음. 조사시점 현재 중국동포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는 35.1%였음.

- 이용 가정의 모 취업률은 87.6%로, 중국동포 육아도우미가 영유아자녀를 둔 취업모 가정에 중요한 육아지원 인력임을 알 수 있음.
 - ▶ 이용 가구의 월 가구소득은 400~600만원 미만 31.3%, 600~800만원 미만 22.4%, 1,000만원 이상 18.5%이며, 모 학력 4년제 대졸 이상 83.0%로 고학력, 고소득 비율이 높음.
- 중국동포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도우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49.0%)이었으며 입주 가능(22.8%), 한국인 도우미를 구하기 어려움(13.5%), 육아 외 가사 일을 봐줌(8.1%) 순으로 나타남.

〈표 3〉 중국동포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이유

단위: %(명)

응답 항목	%	응답 항목	%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49.0	아이에게 더 정성을 기울임	2.7
입주가 가능함	22.8	일을 맡기기에 심리적으로 편안함	1.9
한국인 육아 도우미를 구하기가 어려움	13.5	나의 요구, 우리 가정에 잘 맞음	1.5
육아 외 가사 일을 봐줌	8.1	기타	0.4

주: 1순위, N=259

자료: 최윤경 외(2014). 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현황 및 양육가치관 연구, 188p

- ▶ 취업모는 일·가정 양립의 지원, 비취업모에게는 가사 분담, 자녀양육부담 해소의 기능을 함.
- ▶ 대체로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중국동포 육아도우미를 다시 고용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62.5%로 다수임. 육아와 살림을 맡아주는 지원인력으로서의 수요와 경쟁력을 가짐.

Ⅲ. 중국동포 육아도우미 이용 문제점

채용과정의 신원 미확인²⁾으로 외국인 도우미에게 어린 자녀를 맡기는 불안감, 급여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비용 부담이 큼.

- 중국동포 육아도우미의 경우, 입국 및 도우미 일의 구직 과정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신원 확인의 기회가 거의 전무함.
 - ▶ 가정 내 개별 돌봄서비스의 수요로 인해 직업소개소와 비영리단체에서 공급되는 국내 민간 베이비시터 이용이 증가함. 그러나 수급 및 관리 체계의 부재로 신원이 불확실한 인력에 어린 자녀를 맡겨야하는 부모의 불안감과 비용 부담이 크고, 서비스 질 관리의 편차가 존재함(김소영 외, 2013, p.9, 최윤경 외, 2014 재인용).
 - ▶ 법무부에서 2013년부터 「외국인(동포포함) 육아도우미 전문교육」²⁾을 실시, 교육 이수 도우미의 범죄경력, 건강, 교육이수 등에 대한 신분 정보를 확인하는 「외국인 육아도우미 신원확인 시스템」과 「구인·구직 사이트」³⁾를 개설함. 그러나 인지도와 이용률이 높지 않아 실제 파급력은 크지 않음.
 - ▶ 중국동포 도우미 고용 시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 없다 63.6%, 비자 만료로 불법 체류 중 이었다 12.0%, 불법 체류 여부에 대해 잘 모른다 30.5%로 중국동포 도우미의 합법적 체류 여부에 대해 모르는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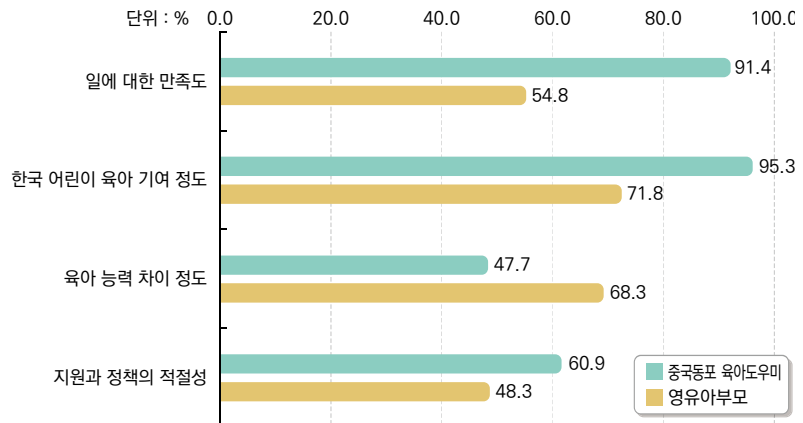
2) 2015년 7월 현재 총 21회기의 교육을 진행하여 수료생 약 700명을 배출함(한국이민재단, 2015).

3) 한국이민재단 사이트(<http://www.kisfbs.com>)

- 중국동포 도우미의 근로만족도(91.4%)가 한국 부모의 고용 만족도(54.8%)보다 높음.

영유아부모는 중국동포 도우미가 육아에 기여하고 있음에 동의하나(71.8%), 한국 돌봄 인력과 비교하여 육아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68.3%)으로 나타남.

육아지원 서비스의 양과 질, 다양성의 부족 및 외국인 육아도우미의 전문성과 제도화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요구가 있으므로, 이는 정책적으로 접근해야할 부분임.



[그림 2] 한국부모 vs. 중국동포 육아도우미 만족도/기여도 등 의견 비교

IV. 중국동포 육아도우미 제도화 전략

- 중국동포 육아도우미 고용 과정의 제도화에 대해 영유아부모의 82.7%, 교육훈련 실시에 대해 89.5%가 찬성
 - ▶ 제도화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주의 역할 및 책임에 동의한다 74.5%로 높게 나타남.
 - ▶ 제도화를 통해 도우미의 신분보증(48.3%), 도우미 교육 및 자격 부여(25.5%), 채용 및 계약 과정 관리(15.8%)의 순으로 나타남.

- 사적 영역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중국동포 육아도우미 근로와 고용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고용가정과 도우미 양자의 관점에서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적정 수준의 제도화가 필요함.

육아지원체계에서 공식 대 비공식, 시설 대 개인 서비스로 구분되는 두 영역 간에 균형 있는 자리매김(mapping)이 필요함(최윤경, 2014, 홍승아, 2014). 육아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최적의 매칭 전략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중국동포 육아도우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도화 방안이 요구됨.

외국인 도우미 사전교육 의무화 및 등록 절차의 마련

표준계약절차의 활성화 및 급여 가이드라인의 제공

고용자·근로자의 역할과 책임, 권리 명시

민간업체 질 관리체계의 마련

기관서비스 위주의 육아지원 설계 내 돌봄인력 정책의 자리매김

최윤경 연구위원 ykchoi@kicce.re.kr